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6. 10.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정의함에 있어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구미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편 부담을 주는 부분이므로 지역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사업예산 반영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구축이 요구되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관련 조항은 상세한 운영계획을 입안 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2조제1호 중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를 “구미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를 “구미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1조(원안 제13조)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귀농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u>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농어업인을 말한다.</u>	1. ----- ----- ----- ----- <u>구미시</u> ----- ----- ----- -----.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u>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u> 을 말한다.	2. ----- ----- <u>농</u> <u>촌지역</u> ----- ----- -----.
제7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u>귀농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삭 제>

② 지원센터는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생 략)

제11조 (생 략)

제12조 (생 략)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이 조

<삭 제>

제7조 (원안 제9조와 같음)

제8조 (원안 제10조와 같음)

제9조 (원안 제11조와 같음)

제10조 (원안 제12조와 같음)

제11조(보고 및 검사) -----

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또는 <u>제10조</u>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u>제14조</u> (생략) <u>제15조</u> (생략) <u>제16조</u> (생략)	----- ----- <u>제8조</u>----- ----- ----- -----. <u>제12조</u> (원안 제14조와 같음) <u>제13조</u> (원안 제15조와 같음) <u>제14조</u> (원안 제16조와 같음)
---	--